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6호로 2021년 2월 17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자치행정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2. 19. ~ 2.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활동하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향경우의 자긍심을 선양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제15조에 따르면 경우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과 정산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사 법정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자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